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議案 番號	171

提出年月日 : 1993. 5. .
提 出 者 : 東 草 市 長

1. 제안 이유

○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이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킴.

2. 주요 골자

○ 면제신청서 및 증명서 제출기일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를 삭제하고 제출기일의 제한을 두지 않음. (안 제3조)
○ 면제 대상중 2급 내지 5급의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것을 "2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별표 동조례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안)

3. 참고 사항

○ 지방세법 제9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 건물및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별 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